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보호 대책 수립 규정 마련〉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8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포함 대상 확대 및 국회 보고 규정 신설 (안 제7조 및 제8조의2)	3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보호 대책 수립 규정 마련(안 제24조제 4항 신설 등)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2.

다. 회 부 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 4항 등).

Ⅲ. 검토의견

1.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포함 대상 확대 및 국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제7조제4항) -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u><신 설></u> -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u><신 설></u>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제7조제4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현행	개정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제8조의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¹⁾,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개정안은 ①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할 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② 기본·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① 현행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실행력 및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 재정 지원 외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데, 기본계획에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³⁾되고 있음.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상생제도 : 수요-공급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법령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추진

□ (소부장 산업법) 수요-공급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특화단지별 발전계획 수립 근거,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 정의 신설 등 특화단지의 제도적 완결성 강화
-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근거 등 수요-공급기업 협력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군 관련 법률에 근거 신설 필요

자료: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

② 한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매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정경제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은 정부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달성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 실익이 없으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법률에 국회 보고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경우 정부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통안전법」⁴⁾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⁵⁾ 등 다수 법률에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교통안전법」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2. (생략) ⑤ ~ ⑦ (생략) <u><신설></u>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u> 11. · 1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보호 대책 수립 규정 마련 (안 제2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 기술개발 지원(제24조) - 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추진 - ②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 시책 수립·추진 - ③ 정부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신설>	○ 기술개발 지원(제24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보호 및 기술 유출·침해행위 방지 시책 수립·추진(제24조제4항 신설)

‘공급망 안정화’는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⁶⁾으로,

공급망 안정화는 중요 물자 확보에 한정되지 않고, ①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취약성 점검, ② EWS⁷⁾ 고도화, ③ 위기대응체계 확립, ④ 공공비축 고도화, ⑤ 국내생산기반 확충, ⑥ 수입선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 ⑦ 물류·사이버보안 등 공급망 인프라 강화, ⑧ 핵심기술

6)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경쟁력 강화 및 보호, ⑨ 공급망 안정화 대외전략 추진, ⑩ 양·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10개 정책 과제로 구성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 상향을 65억원으로 규정⁸⁾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5년간(2020년~2024년 8월) 해외 기술 유출 시도 건수가 97건,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산⁹⁾되는 등 핵심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및 기술유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개발 지원 규정만 두고 있고 개발된 기술의 보호 규정은 미비한 상황으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통하여 개발된 기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9)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30p

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경우 국가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어 사전에 국가적 방어막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기술 보호 및 기술 유출·침해행위 방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전 주기(R&D 지원 → 상용화 → 기술 보호)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보호 및 유출·침해행위 방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u>

문의처

02)6788-5148